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540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희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5. 15. 접수 제3491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3.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원주시 C에 위치한 원, 피고 거주주택과 그 부지의 1/2 지분)의 전체를 소유하던 사람인데, 2020. 5. 15. 이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2. 4. 1. 이 법원 2022드단10637호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평소 원고에게 ‘집을 주면 잘 살아보겠다’거나 ‘땅을 주면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원고의 재산을 탐하여 왔고 자신의 옷을 태우는 등 화를 내고 이혼을 요구해 오다가 ‘집과 터를 나눠주면 앞으로 집을 나가거나 이혼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잘 살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가출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피고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재산을 챙겨 가출한 뒤 이혼을 청구할 계획이었음에도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한 것이다. 원고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또는 ②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가출과 이혼소송제기를 하여 위 증여의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조건부 증여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집과 터를 나눠주면 앞으로 집을 나가거나 이혼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잘 살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위 증여 당시 쌍방간에 위와 같은 혼인생활 유지의

다짐이 전제 혹은 조건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1, 2호증의 각 기재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3, 13(가지번호 있는 것의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거나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조건부이고 그 조건이 위반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 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피고는 파탄의 원인이 원고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이미 제기된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밝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탐하며 끈질기게 재산을 요구하던 끝에 혼인생활의 유지를 전제 내지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무렵인 2020. 5. 10. 피고에게 “그동안 많이 서운했던 점 넓게 푸시고 더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하오” 등의 내용이 적힌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서 전체 내용을 살펴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혼인생활 유지를 전제나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피고도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는 찾을 수 없고, 위 각서 전체의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난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 잘 대해주겠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된다고 보인다.

③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 원, 피고의 혼인상태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관한 주된 귀책자가 피고인 점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고 위 ①과 같이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로부터 혼인생활이 약 2년 가량 이어지다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의 말이 기망이라거나 조건의 성취, 불성취가 피고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증여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발언이 있었음 혹은 그것이 증여의 전제 내지 조건이 되었다는 사정은 원, 피고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접 듣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중 위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원고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위 ② 각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5일 전에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부동산 목록

1. 강원도 원주시 대 512㎡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창고

1층 100.69㎡

2층 97.9㎡

내역 : 1층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2층 조적주 주택

위 1,2 부동산에 대한 의 2분의 1지분 전체

